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151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11. 23.
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-1호 외 1필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6,607.7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(대표 장치영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0 7층(잠원동, 덕성빌딩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7.11.17.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대지면적 : 23,726.56㎡

2) 지하3층/지상35층, 아파트 7개동(597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해당없음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	
	계	60㎡ 이하	60㎡ 초과 ~ 85㎡ 이하	85㎡ 초과 ~ 115㎡ 이하	115㎡ 초과
계	597	60	249	192	96
토지등소유자	406	1	120	190	95
일반분양	136	7	129	0	0
보류지	3	0	0	2	1
재건축소형(임대)	52	52	0	0	0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
1) 신 설 : 도로 976.80㎡, 시설녹지 1,904.34㎡

2) 폐 지 : 해당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시기 : 2018.12. ~ 2019. 2.
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2155-7345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